# 국민입법청구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78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 박주민·이병진·김준혁

이기헌 • 한창민 • 염태영

유종군 • 이재강 • 허성무

박지혜 • 박해철 • 박민규

이훈기 • 안호영 • 채현일

윤준병ㆍ허 영ㆍ이용선

이광희 · 이워택 · 김현정

최민희 • 어기구 • 장종태

임호선 · 김 윤 · 이재관

오세희 • 임미애 • 박정현

양부남 • 문금주 • 송재봉

백승아 · 김영환 · 이수진

강준현 • 이재정 • 김문수

박희승 의원(40인)

##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회를 통하여 국정이운영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제 등의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어 대의제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민입법청구와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권자가 되며, 국민입법청구 법률 안이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국민입법청 구로 접수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및 제6조).
- 라.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6항).
- 마.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그 대안에 국민입법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 바.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4조).

## 국민입법청구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입법청구"란 국민입법청구권자가 이 법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이란 국민입법청구의 제출·접수·관리 등 국민입법청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국민입법청구권자)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를 할 수 있다.
- 제4조(국회의 책무) 국회는 국민입법청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입법청구의 방법) ① 국민입법청구는 청구인의 성명과 생년 월일 및 주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국민입법청구는 본인임을 확

- 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 ③ 국민입법청구를 할 때에는 대표자(이하 "국민입법청구 대표자"라한다)를 선정하고 국민입법청구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1명이면 해당 청구인이 국민입법청구 대표자가 되고, 청구인이다수이면 3명 이하의 국민입법청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국민입법청구 대표자는 국민입법청구서에 청구의 이유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법률안(이하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이라 한다)을 첨 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및 그 밖의 국민입법청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국민입법청구서의 공개 등) ①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국민입법청구서를 지체 없이 국민에게 공 개하여야 하며, 국민이 지지서명을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입법청구서가 국민에게 공개된 이후에 국민입법청구 대표자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입법청구서는 공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입법청구권자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④ 국민입법청구서의 공개 방법, 지지서명의 절차 및 그 밖의 국민

입법청구서 접수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국민입법청구의 회부) ① 의장은 국민입법청구가 접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소관 위원 회에 회부한다.
  - ②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국민입법청구를 회부할 때에 그 내용이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국민입법청구를 회부한다.
- 제8조(국민입법청구의 심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입법청구를 회부받은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국민입법청구 대표자는 소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90일의 범위에 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국민입법청구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민입법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법률안을 제안하여

- 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여 대안에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체계와 자구에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이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의2 를 준용한다.
- 제9조(국민입법청구의 처리) ① 국민입법청구는 제8조제5항에 따른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 채택되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② 소관 위원회가 국민입법청구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해당 국민입법청구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10조(국민입법청구의 접수 및 처리 결과 등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민입법청구의 접수 및 소관 위원회 회부
  - 2. 국민입법청구의 심사 경과
  - 3. 국민입법청구의 처리 결과

- 4. 그 밖에 의장이 국민입법청구의 심사와 관련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국민입법청구의 홍보활동)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대가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 제13조(국민입법청구시스템) ① 국회는 국민입법청구의 제출·접수· 관리 등 국민입법청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벌칙) 제1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